엘리프세종6-3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M4BL]

※ 본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엘리프세종6-3의 분양광고일은 2022년 06월 28일(화)입니다.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M4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20개 호실, 지상 2층 20개 호실 총 40개 호실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용도 : 근린생활시설)

(단위 :㎡, 원)

구분			공급면적				대지 지분	공급가				비고
위치	층	호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토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계 (ⓐ+ⓑ+ⓒ)	
근린생활시설1동	지상1층	101호	118.3980	26.0252	87.2481	231.6713	93.1792	184,494,816	924,095,622	92,409,562	1,201,000,000	
		102호	49.5180	10.8846	36.4900	96.8926	38.9706	77,161,788	373,489,284	37,348,928	488,000,000	
		103호	49.5180	10.8846	36.4900	96.8926	38.9706	77,161,788	373,489,284	37,348,928	488,000,000	
		104호	51.1980	11.2539	37.7280	100.1799	40.2928	79,779,744	385,654,778	38,565,478	504,000,000	
		105호	43.1380	9.4822	31.7886	84.4088	33.9496	67,220,208	325,254,356	32,525,436	425,000,000	
		106호	41.7180	9.1701	30.7422	81.6303	32.8320	65,007,360	299,084,218	29,908,422	394,000,000	
		107호	41.7180	9.1701	30.7422	81.6303	32.8320	65,007,360	299,084,218	29,908,422	394,000,000	
		108호	41.7180	9.1701	30.7422	81.6303	32.8320	65,007,360	299,084,218	29,908,422	394,000,000	
		109호	41.7180	9.1701	30.7422	81.6303	32.8320	65,007,360	299,084,218	29,908,422	394,000,000	
		110호	43.1380	9.4822	31.7886	84.4088	33.9496	67,220,208	309,799,811	30,979,981	408,000,000	
		111호	43.1380	9.4822	31.7886	84.4088	33.9496	67,220,208	271,617,993	27,161,799	366,000,000	
		112호	41.7180	9.1701	30.7422	81.6303	32.8320	65,007,360	269,993,309	26,999,331	362,000,000	
		113호	41.7180	9.1701	30.7422	81.6303	32.8320	65,007,360	269,993,309	26,999,331	362,000,000	
		114호	43.1380	9.4822	31.7886	84.4088	33.9496	67,220,208	271,617,993	27,161,799	366,000,000	
	지상2층	115호	118.4580	90.8469	87.2923	296.5972	93.2264	184,588,272	368,556,116	36,855,612	590,000,000	
		116호	49.5780	38.0219	36.5343	124.1342	39.0179	77,255,442	152,495,053	15,249,505	245,000,000	
		117호	49.5780	38.0219	36.5343	124.1342	39.0179	77,255,442	152,495,053	15,249,505	245,000,000	
		118호	51.2580	39.3103	37.7723	128.3406	40.3400	79,873,200	161,933,455	16,193,345	258,000,000	
		119호	43.1980	33.1290	31.8328	108.1598	33.9968	67,313,664	136,078,487	13,607,849	217,000,000	
		120호	41.7780	32.0400	30.7864	104.6044	32.8793	65,101,014	120,817,260	12,081,726	198,000,000	
		121호	41.7780	32.0400	30.7864	104.6044	32.8793	65,101,014	120,817,260	12,081,726	198,000,000	
		122호	41.7780	32.0400	30.7864	104.6044	32.8793	65,101,014	120,817,260	12,081,726	198,000,000	
		123호	41.7780	32.0400	30.7864	104.6044	32.8793	65,101,014	120,817,260	12,081,726	198,000,000	
		124호	43.1980	33.1290	31.8328	108.1598	33.9968	67,313,664	125,169,396	12,516,940	205,000,000	
		125호	43.1980	33.1290	31.8328	108.1598	33.9968	67,313,664	106,078,487	10,607,849	184,000,000	거주자우선분양
		126호	41.7780	32.0400	30.7864	104.6044	32.8793	65,101,014	108,089,987	10,808,999	184,000,000	거주자우선분양
		127호	41.7780	32.0400	30.7864	104.6044	32.8793	65,101,014	108,089,987	10,808,999	184,000,000	거주자우선분양
		128호	43.1980	33.1290	31.8328	108.1598	33.9968	67,313,664	106,078,487	10,607,849	184,000,000	거주자우선분양
근린생활시설2동	지상1층	101호	46.2420	16.6696	34.0759	96.9875	36.3924	72,056,952	333,584,589	33,358,459	439,000,000	
		102호	46.2420	16.6696	34.0759	96.9875	36.3924	72,056,952	333,584,589	33,358,459	439,000,000	
		103호	46.2420	16.6696	34.0759	96.9875	36.3924	72,056,952	325,402,771	32,540,277	430,000,000	
		104호	46.2420	16.6696	34.0759	96.9875	36.3924	72,056,952	325,402,771	32,540,277	430,000,000	
		105호	46.2420	16.6696	34.0759	96.9875	36.3924	72,056,952	325,402,771	32,540,277	430,000,000	

		106호	46.2420	16.6696	34.0759	96.9875	36.3924	72,056,952	325,402,771	32,540,277	430,000,000	
	지상2층	107호	46.2420	26.6584	34.0759	106.9763	36.3924	72,056,952	129,039,135	12,903,913	214,000,000	
		108호	38.6400	22.2759	28.4740	89.3899	30.4096	60,211,008	107,989,993	10,798,999	179,000,000	
		109호	38.6400	22.2759	28.4740	89.3899	30.4096	60,211,008	107,989,993	10,798,999	179,000,000	
		110호	38.6400	22.2759	28.4740	89.3899	30.4096	60,211,008	107,989,993	10,798,999	179,000,000	
		111호	38.6400	22.2759	28.4740	89.3899	30.4096	60,211,008	107,989,993	10,798,999	179,000,000	
		112호	38.6400	22.2759	28.4740	89.3899	30.4096	60,211,008	113,444,538	11,344,454	185,000,000	

-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당 사업지의 근린생활시설은 2개동으로 각각의 위치가 상이하오니, 단지배치도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는 "근린생활시설=근생, 단지내상가", "상가=점포,호실", "계약자=입점자" 등으로 표기가 혼용 표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각 블록별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또한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당 분양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함.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은 층,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 공히 공급계약 및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하며,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부함),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가격임

▣ 상가 시설 용도

구 분		사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의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단, 장의사·총포판매소·노래방·단란주점·안마시술소·고시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되는 용도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공연장 등은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 500㎡ 미만, '하'목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까지만 가능하오니 관련 법령을 확인 후 계약 신청하시기 바람.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이용시설기준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항목별 이용 가능 용도 및 허가면적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거주자 우선 분양

- **대상호수 : 근린생활시설1동 125호, 126호, 127호, 128호 총 4개 점포**
- 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건축물로서「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 하여 분양분의 10%를 세종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선정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제1항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은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함.
-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은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함.

▣ 청약방법 및 자격

- 청약자격 : 분양광고일 현재(2022년 06월 28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포함] 및 법인
  ※ 청약통장 및 세대주와 무관합니다.
- 청약일시 : 2022년 07월 06일 14:00~15:30
- 청약장소 : 엘리프세종6-3 견본주택[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 / 전화 044-865-6177]
- 청약방법 : 전 호실 개별 공개 청약입니다.(동일인 또는 동일사업자가 한 개 점포에 중복 신청 불가능)
  지정 납부계좌로 청약보증금을 입금하신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 청약장소에 방문합니다.
  입금증 확인 후 청약신청서를 교부받아 청약함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청약신청서는 당첨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 교환 · 변경할수 없습니다.
- 청약 참여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 인 청약시	① 청약신청서 1부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용) ⑤ 인감도장 ⑥ 청약보증금 환불용 계좌 사본(청약자 본인 명의) ⑦ 청약보증금 : 입금증(입금계좌로 무통장입금시 → 무통장입금증 제출,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시 → 입금확인증 제출) ※ 외국인 청약신청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첨부 ※ 재외동포 청약신청시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첨부
대 리 청약시 (본인 이외 제3자로 간주)	상기 본인 청약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대리인 도장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④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용)
법 인 청약시	① 청약신청서 1부 ②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약보증금 : 입금증(입금계좌로 무통장입금시 → 무통장입금증 제출,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시 → 입금확인증 제출) ⑤ 청약보증금 환불용 계좌 사본(법인 명의) ⑥ 법인대표이사 본인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제반서류는 각호실별 청약 및 계약 시 각각 1부씩 필요하므로 각 호실에 따른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청약자와 분양 계약 체결인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 청약보증금 및 납부계좌

- 청약보증금은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청약참여자 본인 명의로의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청약 장소에서 현금 수납은 불가함)

청약보증금	은 행	납부계좌	예금주
일천만원(₩10,000,000)	농협은행	301-0313-2115-81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보증금은 반드시 청약자 본인 명의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와 청약보증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청약보증금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시 1인당 청약신청 호실은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2개 호실 이상을 청약할 경우 각 호실에 따른 청약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시: 1개 호실 청약시 청약신청금 일천만원(₩10,000,000), 3개 호실 청약시 청약신청금 삼천만원(₩30,000,000))
- 당첨자의 경우 청약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액 대체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청약보증금은 사업주체로 귀속됩니다.

▣ 청약 및 당첨자 선정

구분		일시	비고
근린생활시설 2동	청약	2022년 07월 06일 14:00~14:30	12개 점포
	당첨자 선정	2022년 07월 06일 14:40	
근린생활시설 1동	청약	2022년 07월 06일 15:00~15:30	28개 점포
	당첨자 선정	2022년 07월 06일 15:40	

- 근린생활시설2동(12개 점포) 청약 및 당첨자 선정 이후 근린생활시설1동(28개 점포) 진행 예정
- 경쟁발생시 당첨자 선정은 추첨에 의함. 단, 거주자우선 분양호수(근린생활시설1동 125호, 126호, 127호, 128호)의 경우 세종시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며 세종시거주자 경쟁발생 시 추첨에 의함.
- 근린생활시설2동(12개 점포) 청약자 중 미당첨자는 근린생활시설1동(28개 점포) 청약시 기 입금한 청약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청약 가능
- 당첨자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 확인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미당첨자는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당첨 유무는 직접 청약장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미달 점포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수의계약 합니다.

▣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계좌

- 계약일시 : 2022년 07월 07일 10:00~16:00
- 계약장소 : 엘리프세종 6-3 견본주택(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
- 분양대금 납부

구 분	계 약 금	중도금		잔 금
		1회	2회	
납부일자	계약시	2022.12.12	2023.09.11	입점지정일(2025년 01월 예정)
납부비율	10%	10%	10%	70%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분양대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은행 최초영업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자에 따라 자납하여야 함.

- 분양대금 입금 계좌번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농협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호실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단지내상가 중도금 및 잔금 계좌의 경우 상기 계좌와 상이하거나 가상계좌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의 경우 호실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자 표기 예시 : 근린생활시설 1동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동101호홍길동
-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시 타인명의 등으로 입금하여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계약서상 주소지로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첨부)으로 통지하여야 함.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함.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현금수납은 어떠한 경우도 하지 않음.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 인 계약시	① 계약금(분양가의 10% 중 청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영수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용) ⑤ 인감도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대 리 계약시 (본인 이외 제3자로 간주)	상기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대리인 도장 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④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용)
법 인	① 계약금(분양가의 10% 중 청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영수증 ②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함.
- 청약자와 분양 계약 체결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 본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권 전매 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는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통합 및 개별 호실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실 구획(호수 및 면적 조정), 분양가격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의로 조정, 분양할 수 있음.

▣ 청약보증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선정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됩니다.
- 환불방법 : 미당첨자의 청약보증금 환불은 반드시 청약시 제출한 통장사본의 환불계좌로 입금되며, 환불시 청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송금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 참여시 제출한 통장사본(환불계좌)에 문제(입 · 출금불가, 휴먼계좌 등)가 있어 환불이 안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통장사본(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신청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입점예정일 : 2025년 01월 예정

-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보존등기는 입점일과 상관없이 인허가 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일 이후의 상가관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 의 사 항

■ 공통사항

- 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장, 평면도, 배치도, 호실위치, 내외부 기둥, 면적, 출입문, 층고, 계단, 엘리베이터 위치 등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 시 제출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기체결 된 계약은 취소 및 고발조치 됨.
- 외국인이 본 시설을 계약할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조정, 분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공급된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체(점포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 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공급받는 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최초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운영비용부담 등은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 및 입점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 분양대금 완납 후 입점증(공급회사 발행)을 교부받아야 가능함.
- 입점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됨.
-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음.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축/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필요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람.
-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함.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토지 소유권 이전은 입점일과 관계없이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점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권 전매 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는 2인 이상에게 전매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본인의 책임 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 함. 설령 사업주체가 권리의무 승계 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 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전매제한 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 제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전매신청기일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짐.

■ 지구여건 관련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세종시 6-3생활권 M4블록과 인접하여 가로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전력, 수도시설, 도시가스 및 열공급관로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지상 노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학교 개교 관련

- 초등학교는 6-3생활권 산울초(가칭), 중학교는 6학군(6-3생활권 산울중(가칭), 6-4생활권 해밀중)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산울초·중학교는 통합·연계 운영학교로 설립 예정이며,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배치 될 예정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은 개교 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확정되므로 통학구역 및 학군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개교 지연 시 학생 배치 가능한 인근(또는 인근생활권)학교로 임시 배치 될 수 있음
- 위 학교 관련사항은 세종시 교육청에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람.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세종시 교육청 전화번호 : 044-320-1000)
- 향후 개교 예정인 단지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접 동에 소음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학원, 교습소 등을 개업하고자 하는 분은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인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종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학교보건법」및「풍속영업의 규정에 관한 법률」등의 저촉여부 및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단지여건 관련**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입면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도와 보도 사이에는 보행 안전을 위한 가드안전휀스가 설치되며 차도에서 상가로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입주시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점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지층, 측벽, 입면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점포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광고홍보물 관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함.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 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의 상가 외관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형태,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준공 후 폴딩 창호 등으로 변경 시 소유권자가 관련기관에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각종 분양자료(CG, 카다로그, 팜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승인도면 및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현장방문 또는 충분한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기된 도로 등의 주변개발 조성계획(학교, 도로망 등 각종 시설 포함)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상가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 확인 또는 신청 전 문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함.
-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홍보물 등에 표현된 근린생활시설의 명칭 및 점포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임.
- 단지모형과 근린생활시설모형의 입면 및 평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모양이 다른 경우 스케일이 큰 상가모형을 우선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 모형의 가구 및 사람은 활용예시를 보여주는 내부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름.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 및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주변의 "도로, 공원등"의 개설 시기가 분양자료(모형,CG등)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바람.
- 팜플렛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홍보물(CG 등)의 사업부지 외의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공원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은 형태, 층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적 관련**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 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분양금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의조정 분양할 수 있음.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하천계획관련 지구단위계획, 관련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점자는 동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 내부에는 전용면적에 기둥 및 구조벽체 등으로 인한 실사용면적이 호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과 출입구로부터 위치, 거리 등 종합적인 여건등을 감안하여 분양가액을 책정하였기에 이를 확인 후 분양받은 부분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사용승인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철거 및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화장실, 계단실, 출입층해당복도, E.V홀등)은 상가 전체공용으로 하며, 해당동별 시설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공용면적은 해당 동별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점포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됨.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각 블록별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또한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해 대지지분이 분할되어 있으나 대지가 별도 구획된 것은 아니므로 상호간에 임의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 및 공용공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호당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전기/기계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단,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음)

■ **시설, 조경 및 간판 관련**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부가되는 시설(진열대, 간판,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 등 추가되는 시설)은 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또한 급수/급탕 밸브, 바닥배수구, 가스공급밸브 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내부배관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인근 조경의 경우 사용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며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상가 간판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가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오니 준수하시기 바라며, 상가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세종시청 2018-06호, '18.01.25)"에 충족하도록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행복청 관련 지침 및 세종시 관련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일부 점포는 외부구조물(환기구, 배관) 등으로 인하여 간판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창호가 설치되는 외벽과 상가 외부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점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 및 설계 관련**

- 설계변경에 따른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점포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 상가 점포사이 벽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벽체 철거 후 영업 시 각 점포 사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량벽체 또는 콘크리트블록 벽체로 시공된 점포간 벽의 경우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별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벽체에 부착물 설치시에는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상업시설의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됨.
- 건축물의 현장 여건 및 기능, 구조,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외관디자인 계획(색채 포함), 경관 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옥외시설물, 조경계획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내부에는 구조상 기둥이 설치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도 천장 내부의 소방 및 가스, 위생설비 배관 설치로 인하여 반자 높이는 조정될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및 간격, 유리두께, 사양 등은 공사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출입문, 창호의 크기 및 위치는 단지레벨 및 기타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층이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천장고는 바닥레벨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호실별 천장고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않음.
- 도로면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우수, 배수 등을 위한 트렌치 및 그레이팅 설치로 인해 통행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분양된 점포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용도변경, 점포관리, 등록 등의 기타 인가)은 공급 받는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점포별로 지정된 용도(상가:근린생활시설)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점시 및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당해 점포별 용도변경은 관계법령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가 관청에 문의하여 입점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입점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 또는 설계공모 등에 의해 입점업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상가 점포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시·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계/전기/마감/주차장 관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휀룸 및 장비실 인접점포의 경우 소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는 추후 확정 및 변동될 수 있음.
- 상가 복도에는 소방시설물로 수신기, 발신기, 전원반 등이 설치될 예정임.
- 세탁소가 입점하는 경우에 배수관이 PVC관으로 시공되어 있어 온수를 배출할 시에 배수관의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배수관의 변형·파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함. 이로 인한 분쟁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본 사업지 주변의 기반시설(우오수 설비관련 시설)의 설치위치에 따라 사업지 건물의 설비 시스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되는 설비 및 장치 등에 따라 공동 경비 등 비용이 일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소방시설물 설치에 따른 전력요금 변동사항 발생할 수 있음)
- 위치에 따라 일부 점포의 전면에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호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시공시 일부 호실 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개폐를 위해 화물 적재 및 가구설치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 통신, 맨홀(인입장비 포함),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의 위치 및 우·오수배관, 우·오수맨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으며, 일부 매장 출입문 및 벽체 근처 우·오수관련 구조물 및 전기 인입을 위한 장비,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에 불리할 수 있음.
- 각 실의 천정에 밸브 조작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개별적으로 천정 공사를 하실 경우에도 밸브조작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
- 전기는 각 점포별로 검침되어 요금이 개별 고지되며, 공용시설(화장실, 복도 등) 및 기타 공공요금은 수분양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천장고, 내부 기둥의 크기 및 위치, 칸막이벽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설계 및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소방, 기계/전기 설비 관련 덕트, 배관/배선 등으로 인해 사용 면적 및 천장고가 축소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내부 천장에는 소방, 기계/전기 배관, 배선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근린생활시설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내·외부로 돌출 기둥이 존재하며 계약자는 계약 전 기둥의 위치와 크기, 형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의 각 호실의 층고/천장고, 창호(출입문)의 크기 및 위치는 다를 수 있으며, 호실별 층고의 상이 및 창호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상가 점포사이 벽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내력벽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전기, 통신, 설비의 공사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내부 칸막이의 변경 및 그에 따르는 건축, 전기, 통신, 설비 등 해당 모든 공사는 입점자가 부담함.
- 각 점포 호별로 급수(계량기 포함)배관, 가스배관, 냉매배관(점포 → 별도 실외기실까지 냉매배관 설치됨, 점포별 실외기실까지 거리가 상이하여 냉난방기 설치시 입점자가 거리를 감안하여 냉난방기를 설치 하여야 함), 배수배관, 스프링클러가 시공되나 가스계량기는 설치되지 않으니 추후 계약자가 별도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수도 요금은 근린생활시설 전체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오니, 추후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사용량을 계량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됨.
- 조리를 위한 주방이 입점시에는 주방을 위한 기타 필요한 시설과 소방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을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주방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공동주택에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점포 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의 전기, 가스, 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기본용량을 초과하여 증설할 경우에 발행하는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상세내역은 계약 전 공급회사에 확인 바랍니다.
- 상가 점포별 최초 가스 기본용량은 D20이며, 수도 기본용량은 D15입니다.
- 상가 점포별 기본 설계 전기 용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한전에 최초 계약 용량은 각 상가별 5kw로 하고, 입점지정 기간에 계약자는 전기사용계약변경(명의변경)을 하여야 하고, 점포 면적 및 용도별 전기계약 용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점 후 반드시 한전에 문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분양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함

구분		전용면적(㎡)	전기용량(VA)	비고
근생-1	상가-1	118.3980	18,000	
	상가-2	49.5180	8,000	
	상가-3	49.5180	8,000	
	상가-4	51.1980	8,000	
	상가-5	43.1380	7,000	
	상가-6	41.7180	7,000	
	상가-7	41.7180	7,000	
	상가-8	41.7180	7,000	
	상가-9	41.7180	7,000	
	상가-10	43.1380	7,000	
	상가-11	43.1380	7,000	
	상가-12	41.7180	7,000	
	상가-13	41.7180	7,000	
	상가-14	43.1380	7,000	

구분		전용면적(㎡)	전기용량(VA)	비고
근생-1	상가-15	118.4580	18,000	
	상가-16	49.5780	8,000	
	상가-17	49.5780	8,000	
	상가-18	51.2580	8,000	
	상가-19	43.1980	7,000	
	상가-20	41.7780	7,000	
	상가-21	41.7780	7,000	
	상가-22	41.7780	7,000	
	상가-23	41.7780	7,000	
	상가-24	43.1980	7,000	
	상가-25	43.1980	7,000	
	상가-26	41.7780	7,000	
	상가-27	41.7780	7,000	
	상가-28	43.1980	7,000	

구분		전용면적(㎡)	전기용량(VA)	비고
근생-2	상가-1	46.2420	7,000	
	상가-2	46.2420	7,000	
	상가-3	46.2420	7,000	
	상가-4	46.2420	7,000	
	상가-5	46.2420	7,000	
	상가-6	46.2420	7,000	
	상가-7	46.2420	7,000	
	상가-8	38.6400	6,000	
	상가-9	38.6400	6,000	
	상가-10	38.6400	6,000	
	상가-11	38.6400	6,000	
	상가-12	38.6400	6,000	

- 공급받는 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최초일로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운영비용부담 등은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1과 근린생활시설2의 위치 및 규모가 달라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기된 도로 등의 주변개발 조성계획(학교, 도로망 등 각종시설 포함)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6-3M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129-82-10595)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314-81-07954) 금호건설 주식회사(104-81-31309) 이수건설 주식회사(206-81-40254) 흥한주택종합건설(주)(613-81-04683) (주)신흥디앤씨(504-81-46827)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314-81-07954) 금호건설 주식회사(104-81-31309) 이수건설 주식회사(206-81-40254) 흥한주택종합건설(주)(613-81-04683) (주)신흥디앤씨(504-81-46827)

▣ 홈페이지 : http://www.엘리프세종6-3.com

▣ 분양사무소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1-4 (분양문의 044-865-6177)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